



탄소성적표시제도 현황 및 전망

Trends of Carbon Labeling

김 익 / 스마트에코(주) 대표이사

1. 서론

지금 전 세계는 탄소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1997년에 수립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의정서를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일본 등지에서도 자국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정작 그 성과를 돌아쳐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지속가능하지 않는 소비패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고 노력해도 불과 5%에도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소비부문에서는 매년 최소 1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온실가스 총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소비를 잡지 못하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이다.

이에 EU에서는 지난 2008년도에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및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을 위한 행동계획(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Sustainable Industrial Polic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그간 별개로 정책이 수립되어 오던 생산부문과 소비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본 행동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원효율성(Resource efficiency)를 높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는 탄소라벨링을 포함한 환경라벨링과 에너지라벨링 등에 의해서 생산부문과 소비부분을 효과적으로 연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탄소라벨링은 생산부문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을 소비부문에서 독려해 줌으로써 생산과 소비가 톱니바퀴와 같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정책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지난 2008년도에 시범인증을 실시한 이래로 2009년 2월부터 정식제도로 출범하였고 2011년도 9월말 현재에는 인증제

[표 1]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제품군 분류	인증제품수(개)		증감률(b/a)
	2010.9(a)	2011.9(b)	
비내구재	165	246	149%
내구재 일반제품	14	16	114%
생산재 일반제품	21	66	314%
에너지사용 내구재	40	105	263%
서비스	11	14	127%
합계	251	447	178%

품수가 447개에 이르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지금까지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고, 2011년 11월부터 출범하는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의 2단계인 저탄소상품 인증의 주요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그밖에 해외 인증동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안내해 드릴 것이다.

1. 탄소성적표지제도 운영현황

2009년 2월 출범한 탄소성적표지의 인증실적을 보면 그간 눈부신 성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2010년 9월말 현재 누적인증수와 2011년 9월말 현재의 누적인증실적을 대비표로 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인증제품수는 251개에서 447개로 17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년 동안 거의 200여개의 인증제품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부 제품군별로 분석해 보면, 생산재 일반제

품과 에너지사용 내구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내구재 일반제품과 서비스 품목은 증가세가 주춤한 분위기이다. 그리고 비내구재 제품은 인증제품수가 다른 모든 제품군들 중에서 가장 많아 인증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내구재 제품의 경우에 대부분이 포장용기에 담긴 제품이 주를 이루는데 그 중에서 애경산업에서 동기간에 인증제품이 23개가 늘어났으며, 다음으로 유한킴벌리가 7개, 아모레퍼시픽이 5개, 삼양사가 4개의 제품이 추가되었다.

에너지 소비제품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최근 조달청의 종합낙찰제에서 일부 사무가 전제품에 대해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생산재 일반제품에서의 증가세는 명확치는 않지만 저탄소상품 인증제도의 출범에 따른 녹색상품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탄소성적표지제도의 인증제품 증가세는 예년에 비해 다소 주춤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저탄소상품 인증제도의 출범이 늦어지고 저



[그림 1] 저탄소상품 인증 도안



탄소상품에 대한 녹색제품으로의 포함여부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다소 관망세로 돌아선 게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예측을 해 본다.

2. 저탄소상품인증 추진방향

환경부는 지난 9월 6일에 그간 추진해오던 탄소성적표지 인증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저탄소상품인증 출범을 위한 근거인 “탄소성적표지 인증업무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환경부 고시 제2011-130호로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앞으로 환경부가 추진할 저탄소상품인증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담겨있다.

본 원고에서는 본 환경부고시에 담겨있는 저탄소상품 인증의 주요 골자를 소개하기로 한다.

2-1. 저탄소상품 인증도안 확정

환경부는 지금까지 알려져 왔던 저탄소상품인증도안을 일부 변경한 저탄소상품 인증도안을 최종 고시하였다.

본 인증도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기업들이 저탄소상품 인증도안에 탄

소배출정보를 기입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탄소배출정보에 대한 공개라는 점도 고려하여 탄소배출정보를 공개한 도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인증기업들의 혼돈을 막기 위하여 탄소배출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A형을 기본형으로 하기로 하였다. [그림 1]에 저탄소상품 인증도안을 제시하였다.

2-2. 저탄소상품 인증기준 수립방향 제시

저탄소상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제품의 기능단위당 평균 탄소배출량에 기초하여 작성된 ‘최소탄소배출량’ 과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하여 작성된 ‘최소탄소감축률’ 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이는 지금까지 인증기관에서 제시해 오던 인증기업들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최소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 중에서 한시적으로는 한 가지를 만족해도 저탄소상품으로 인정하겠다는 당초의 원칙보다 강화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표 2] 탄소라벨링 국제동향

국가	표시방식			운영기관			인증기준	
	탄소 발자국	탄소 저감	저탄소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일반 지침	PCRs
한국 탄소성적표지	○	○	○	○			○	○
영국 Carbon Reduction Label	○	○			○		○	○
스웨덴 Climate Declaration	○				○		○	○
스위스 Climatop	○		○		○		○	
프랑스 Indice Carbon	○					○	○	
미국 Carbon Conscious Carbon Label	○				○		○	
캐나다 CarbonCounted Carbon Label	○				○		○	
일본 Carbon Footprint of Products(CFP)	○			△ (시범)			○	

아직까지 인증기관에서 인증제품군별로 최소 탄소배출량과 최소탄소감축률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다 구체적인 것을 언급하기는 시기상조일 거라 여겨지지만 인증기업들이 저탄소상품 인증을 취득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2-3. 인증수수료의 인상

인증수수료가 당초 탄소배출량 인증심사에서는 10man.day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탄소상품 인증에서는 인증심사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심사일수를 심

사원당 1일을 추가한 12man.day로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증심사비용도 현재보다 약 20%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을 위한 인증심사비의 일부가 지원되는 정책이 시행되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태에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4.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에 대한 인정

그간 인증기업을 중심으로 인증기관에서 수립한 저탄소상품 인증기준보다 초과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하여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에



[표 3] 한국, 영국, 일본 국가별 기준

구분	한국	영국	일본
시스템경계 : 제외기준 설정	ISO 14044에 따라 투입원료 누적질량기여도 기준으로 설정	총 온실가스의 누적발생량 기여도를 기준으로 설정	총 온실가스의 누적발생량 기여도를 기준으로 설정
온실가스 인정범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24개 온실가스	IPCC 2006년판에 따른 온실가스 물질	교토의정서에 따른 24개 온실가스
사용단계 인정범위	에너지소비제품에 한정	가능한 모든 제품	가능한 모든 제품

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하여 이번에 발표된 환경부 고시에서는 어느정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고시 제2011-130호의 제10조제2항을 보면 “저탄소상품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시에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바로 이 조항이 온실가스 추가 감축분에 대한 감축실적을 저탄소상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시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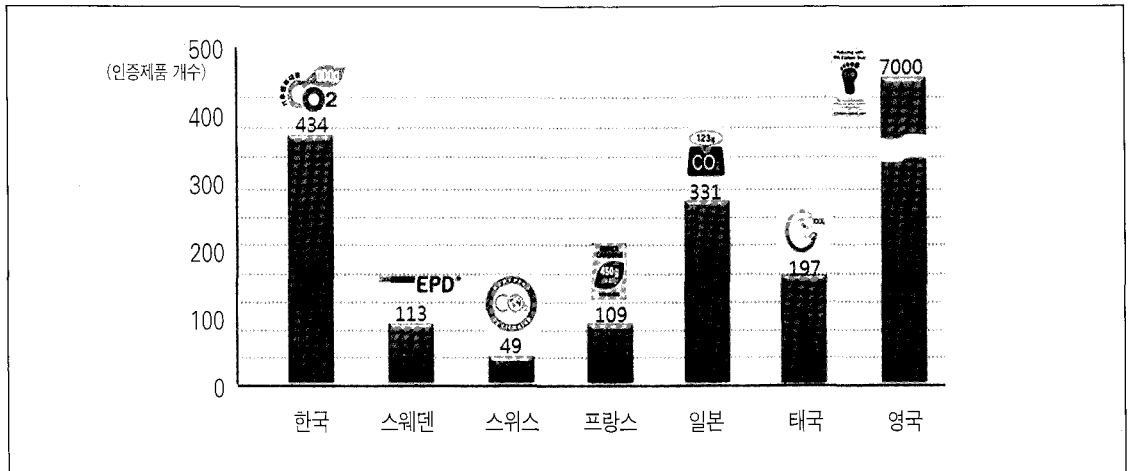
본 고시에서는 감축정도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서 추가적인 방안이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탄소라벨링 국제동향

2011년도 현재 탄소라벨링 인증을 도입한 국가는 비교적 앞서있는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을 포함하여 대만, 태국, 호주 등 11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인증제도에 대하여 표시방식 및 운영기관의 구조, 인증기준의 측면에서 서로 비교하였다. [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림 2] 국가별 인증제품 개수(2011.8월말 현재)



특히, 인증기준과 관련해서 현재 ISO에서 국제표준이 제정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행 중인 관계로 국가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큰 틀에서는 ISO 14044를 따르기 때문에 원칙론적인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국제표준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분야이다. 이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외기준 설정과 온실가스의 인정범위, 사용단계의 인정범위에 관하여 국제표준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인증기업의 부담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증기준은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설정된 반면에 일본과 영국은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이들 문제에 대해 국제회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될 것이다.

2011년 8월말 현재 국가별 인증제품의 개수를 보면 영국이 약 7000개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가고 있고 다음으로는 430여개의 한국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으로는 일본과 태국의 순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증제품 수가 제일 적은 국가는 스위스로 4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II. 결론

탄소성적표지제도는 우리 사회의 저탄소 녹색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본 제도는 그간 저탄소라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게 사실이다.

하지만 본 제도가 지금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기업으로부터의 참여동기가 보다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저탄소상품 인증제도의 출범과 함께 저탄소상품의 녹색제품 포함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저탄소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인센티브 방안과 녹색소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연계한 보다 광범위한 교육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pac.com](http://www.kopac.com)

독 자 결 령 모 집

월간 포장계는 독자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의 독자컬럼을 모집합니다.

어떠한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포장인의 독설을 펼칠 지면을 할애하니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월간 포장계 편집실

TEL : (02)2026-8655~9

E-mail : kopac@chollian.net